##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29 발의연월일: 2020. 8. 24.

발 의 자: 박재호·전재수·최인호

김정호・허 영・한병도

정춘숙 · 김승남 · 이해식

김윤덕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」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·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,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·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111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1. 「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